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13,420,868 | 12,402,626 |
| 일반회계 | 379,969,995 | 11,399,100 |
| 특별회계 | 33,450,873 | 1,003,526 |
| 기타특별회계 | 33,450,873 | 1,003,526 |
|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| 2,239,928 | 67,198 |
| 섬진강댐특별회계 | 8,002,223 | 240,067 |
|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| 948,000 | 28,440 |
|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| 6,988,637 | 209,659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455,710 | 13,671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81,013 | 2,430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3,684,405 | 410,532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1,050,957 | 31,529 |

제 2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과 같다.

제 3 조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으로 한다.

제 4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9,100,000천원」으로 한다.

제 5 조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21,204,583천원」과 같다.

제 6 조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「명시이월 사업조서」와 같다.

제 7 조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「계속비 사업조서」와 같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한다.